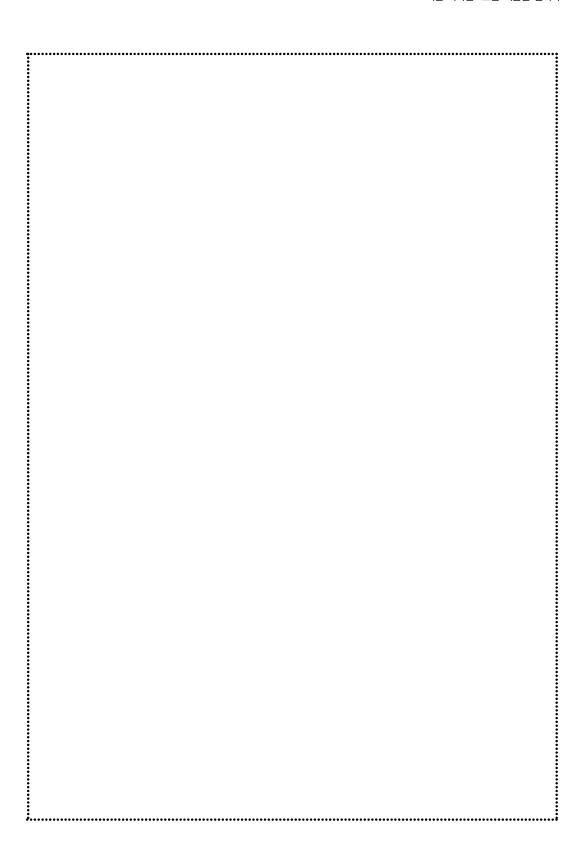
제 6 1 회 변리사 시험 대비

DESIGN LAW

제 60회 (2023) 기 출 문 제

이 준 권



2023년도 제60회 디자인보호법 1차

- 31.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③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 ④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 인이 속하는 분이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60-01-1] (○) [2017허806]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u>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u>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 ② [60-01-2] (O) [제3조]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7조]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하려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을 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i)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ii)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ii)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iii) 디자인권의 청구범위</u>
- ③ [60-01-3] (X) [2015후1669]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60−01−4] (O)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거절이유, 정보제공 사유, 이의신청 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하다.
- [60-01-5] (○) [제33조]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 다)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사기준]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주체) 출원된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에 대하여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 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지는 불투명하다.
- ②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 ③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 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 다.
- 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 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 [60-02-1] (X) [심사기준] 물품류 및 물품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근거하여 용도와 기능 등을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르며, <u>활자 및 글자체는 18류에 해당한다</u>.
- ② [60-02-2] (○) [심사기준]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가)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된 서예나, 회사또는 상품의 이름 등을 표상하기 위한 조립문자인 로고타입 등은 성립요건 위반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60-02-3] (X) [2012후597]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 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u>마찬가지로 적용된다.</u>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60-02-4] (X) [심사기준] (글자체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수 없다. (i)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ii)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 제33조 제1항 본문위반의 경우 반려사유가 아닌 거절이유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60-02-5] (X) [제94조]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i) <u>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u>, (ii) <u>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u> (→ 강의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글자체를 사용한 행위 및 글자체가 사용된 강의노트를 사용한 행위는 각각 제9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3.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②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 ③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03-1] (O) [제5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i)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 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ii)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 ② [60-03-2] (O) [심사기준] (분할출원의 주체)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u>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u> (→ 분할출원은 원출원 디자인과 관련한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원출원의 권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③ [60-03-3] (O) [제50조]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60-03-4] (X) [제50조]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u>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u>,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u>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u> (→ "추정"과 "간주(~로 본다)"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⑤ [60−03−5] (○) [제50조]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u>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u>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 ②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 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③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 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⑤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 [60-04-1] (O) [심사기준] (유사판단) (1)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른 비유시물품으로 본다. (2) 보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위의 (1)에도 불구하고 양 물품은 유시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시여부를 판단한다. (→ 원칙적으로 부품이 공지된 경우에도 완성품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지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은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품의 공지로 인해 완성품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 ② [60-04-2] (O) <u>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만이 공지된 경우에는</u> 이후에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지만, <u>"부분디자인의 도면"이 공지된 경우에는</u> 도면의 파선부분도 신규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지위가 있으므로 파선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과 전체로서 동일 · 유사시 후출원된 전체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60-04-3] (O) [심사기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벌 전체로서만 신규성 요건을 판단한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i) 한 벌의 물품(A) 공지 후 한 벌 물품(A, A')을 출원한 경우, (ii) 한 벌의 물품(A) 공지 후 구성물품(a, a')을 출원한 경우이다. (→ 한 벌 물품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구성물품의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나. 구성물품이 공지된 경우 한 벌 물품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 아니다)
- ④ [60-04-4] (O) [심사기준] 형틀과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양디자인은 비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일방의 공지로 인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③ [60-04-5] (X) 공지된 디자인의 물품은 '전사지'이고, 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은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이다. 따라서, 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이 공지된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전사지에 표현된 모양'이 공지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용이창작 규정이 문제 될 수는 있다.

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L.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C.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60-05-1] (O)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라고 규정하며, 공지된 디자인의 범위를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 ② [60-05-2] (X) [심사기준]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제46조 제2항 위반)를 통지한다. 다만,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취</u>지를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 ③ [60-05-3] (O) [제33조]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 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 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60-05-4] (O) 특허법에서는 발명자 또는 출원원인이 같을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u>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인이 같을 경우에만 본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u>
- [60-05-5] (X) [2004후2987] (등록요건 판단)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11후3469] (권리범위 판단)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 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 간하여야 하고 (생략)

36.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③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 [60-06-1] (O) [제94조]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iii)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 ② [60-06-2] (O)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③ [60−06−3] (○) [제105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④ [60−06−4] (O) [제108조]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⑤** [60-06-5] (X) [제111조]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u>그 디자인권은 소멸</u>된다.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 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 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 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60-07-1] (X) [제90조]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1조] ① 디자인권은 제90조 제1 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② [60-07-2] (X) [제91조] ① 디자인권은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u>다만</u>,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③ [60-07-3] (X)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u>디자인보호법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u>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 199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60-07-4] (X) [제84조]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u>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 **⑤** [60-07-5] (O) [제199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38.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자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이야 한다.
-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④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괴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 [60-08-1] (O) [2016후878]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u>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u>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② [60−08−2] (○)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iv)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③ [60-08-3] (O) [2009후155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u>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u>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④ [60-08-4] (X) [제35조]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u>그 기본디자 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u>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 ·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60-08-5] (○) [98후2900]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9.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날부터 (¬)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기간의 만료일부터 (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 이내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ㄹ)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①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②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③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④ ¬: 3개월, ∟: 1년, □: 20일, □: 3일

⑤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 [60-09-1] (2개월) [제19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u>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u>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60−09−2] (1년) [제19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60-09-3] (30일) [제48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i)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ii)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iii) <u>제120</u>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첫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60-09-4] (3일) [제138조]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40.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지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 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 지정이 가능하다.
- [60-10-1] (X) [제173조]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단)을 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173조 내지 제178조에서는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60−10−2] (O) 국제사무국에서는 국제출원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실체 심사는 지정국의 관청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 ③ [60−10−3]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은 기초출원(또는 기초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기초출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60−10−4] (O) 특허협력조약(PCI)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절차가 존재하지만,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에는 국제조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60−10−5] (O)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은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은 자기지정이 불가하다)